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15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내용을 통합하여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협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(1차 2017. 7. 4. ~ 7.25., 2차 2017. 9. 15. ~9. 24.) : 해당 없음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행정6급 김승진 (02-3999-144)